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60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3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미술위원회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한 바, 위촉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통일하며,
- 미술작품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나,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되는 변동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므로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신고 시 미술작품 설치대상 면적을 확정된 후 미술작품 심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,
-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안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)
- 미술작품설치계획서는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(안 제19조)
-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, 일반

시민을 위촉하며, 임기를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(안 제21조)

-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음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중 “심의”를 “자문 또는 심의”로 하고,

안 제7조제4항의 단서조항 “다만,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.”를 삭제하며,

안 제8조제1항 중 “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”을 “15명 이내의 위원”으로 하고,

안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

- “1. 미술, 건축, 디자인,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관련 학회·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미술, 건축, 디자인,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
3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”을

- “1. 미술·기획·건축·조경·유지관리 등의 전문가
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3. 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”으로 하며,

안 제8조제4항 중 “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하고,

안 제10조 조제목 “위원의 위촉 해제”를 “위원의 해촉”으로 하며,

안 제10조 중 “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”를 “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”로 하고,

안 제15조 중 “지역주민, 외부 전문가 또는”을 “작가 또는”으로 하며,

안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

- “1.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(형식미, 내용미, 독창성)
2. 건축물 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(환경과의 친화성, 설치위치의 적정성)
3.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
4.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
5. 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
6. 소장품 설치의 적정성
7. 건축물 미술작품가격의 적정성
8.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
9.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·철거
10.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”을

- “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축물미술작품
2.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
3. 건축물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”로 하고,

안 제18조제2항을 삭제하며,

안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

“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.

1. 미술작품의 가격
2. 미술작품의 예술성
3.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
4.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
5. 미술작품의 안전성
6. 유지관리의 적정성
7.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”으로 하고,

안 제19조제3항 중 “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(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)전까지”를 “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”로 하며,

안 제21조제1항 “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시마다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”를 “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”로 하고,

안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

- “1. 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3. 그 밖에 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등”을

“1. 미술·기획·건축·조경·유지관리 등의 전문가

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
3. 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”으로 하며,

안 제21조제3항제4호를 신설하여 “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시민위원 선정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”으로 하고,

안 제21조제4항 중 “1년으로 하되,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하며,

안 제22조의 조제목 “규정의 준용”을 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”으로 하고,

안 제22조 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, 같은 조 본문 중 “구성 및”을 “운영에 관한 사항은”으로 하고,

안 제22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

“다만, 제15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,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하며,

안 제22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)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공미술의 정책, 제도,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<u>심의</u>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(이하 "공공미술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5조(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(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<u>자문 또는 심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) ④ 제2항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 <u>다만,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</u></p>	<p>제7조(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)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) ④ ----- ----- ----- ----. <삭 제></p>
<p>제8조(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)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</u>으로 구성한다. ② (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. 1. <u>미술, 건축, 디자인,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 2. <u>관련 학회·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미술, 건축, 디자인,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</u> 3. <u>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</u> ④ <u>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8조(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<u>15명 이내의 위원</u> ----- -----.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 <u>1. 미술·기획·건축·조경·유지관리 등의 전문가</u> <u>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</u> <u>3. 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 ④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
<p>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</p> <p>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, <u>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</p> <p>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p>
<p>제15조(협조요청 등)</p> <p>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<u>지역주민, 외부 전문가 또는</u> 관련 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협조요청 등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5조(협조요청 등)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작가 또는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8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)</p> <p>①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</u> (형식미, 내용미, 독창성) 2. <u>건축물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</u> (환경과의 친화성, 설치위치의 적정성) 3. <u>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</u> 4. <u>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</u> 5. <u>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</u> 6. <u>소장품 설치의 적정성</u> 7. <u>건축물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</u> 8. <u>제20조 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</u> 9. <u>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·철거</u> 10. <u>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</u> <p>② <u>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8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8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<u>문화예술진흥법</u>」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<u>건축물 미술작품</u> 2. <u>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</u> 3. <u>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</u> <p><삭 제></p>

	<u><신 설></u>	<p>③ <u>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미술작품의 가격</u> 2. <u>미술작품의 예술성</u> 3. <u>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</u> 4. <u>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</u> 5. <u>미술작품의 안전성</u> 6. <u>유지관리의 적정성</u> 7. <u>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</u>
제19조(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)	제19조(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)	제19조(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)
<p>③ <u>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(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)전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③ <u>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제21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)	제21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)	제21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)
<p>① <u>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 2. <u>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</u> 3. <u>그 밖에 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등</u> 	<p>① ----- -----60명 이상 <u>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시마다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	<p>① ----- -----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미술·기획·건축·조경·유지관리 등의 전문가</u> 2. <u>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</u> 3. <u>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

<p>4. <신 설></p> <p>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<u>1년으로 하되,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4. <신 설></p>	<p>4. <u>미술작품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</u></p> <p>④ -----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제22조(규정의 준용)</p> <p>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<u>구성 및 운영</u>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22조(규정의 준용)</p> <p>① (원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.</p> <p>③ 건축주, 작가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.</p> <p>④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)</p> <p>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<u>운영에 관한 사항</u>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제15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,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삭 제></p>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5조 중 “심의”를 “자문 또는 심의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4항의 단서조항 “다만,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.”를 삭제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”을 “15명 이내의 위원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

- “1. 미술, 건축, 디자인,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관련 학회·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미술, 건축, 디자인,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
3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”을

- “1. 미술·기획·건축·조경·유지관리 등의 전문가
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3. 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4항 중 “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

만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10조 조제목 “위원의 위촉 해제”를 “위원의 해촉”으로 한다.

안 제10조 중 “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”를 “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15조 중 “지역주민, 외부 전문가 또는”을 “작가 또는”으로 한다.

안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

- “1.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(형식미, 내용미, 독창성)
2. 건축물 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(환경과의 친화성, 설치위치의 적정성)
3.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
4.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
5. 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
6. 소장품 설치의 적정성
7. 건축물 미술작품가격의 적정성
8.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
9.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·철거
10.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”을

- “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축물미술작품
2.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
3. 건축물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”로 한다.

안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안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

“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.

8. 미술작품의 가격
9. 미술작품의 예술성
10.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
11.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
12. 미술작품의 안전성
13. 유지관리의 적정성
14.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”으로 한다.

안 제19조제3항 중 “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(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)전까지”를 “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”로 한다.

안 제21조제1항 “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시마다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”를 “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

- “1. 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3. 그 밖에 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등”을

“1. 미술·기획·건축·조경·유지관리 등의 전문가

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
3. 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안 제21조제3항제4호를 신설하여 “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시민위원 선정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”으로 한다.

안 제21조제4항 중 “1년으로 하되,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22조의 조제목 “규정의 준용”을 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”으로 한다.

안 제22조 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, 같은 조 본문 중 “구성 및”을 “운영에 관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안 제22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

“다만, 제15조는 3심이상의 작품에 한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22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제18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)</p> <p>①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 (형식미, 내용미, 독창성)</u> 2. <u>건축물미술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(환경과의 친화성, 설치위치의 적정성)</u> 3. <u>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</u> 4. <u>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</u> 5. <u>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</u> 6. <u>소장품 설치의 적정성</u> 7. <u>건축물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</u> 8. <u>제20조 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</u> 9. <u>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·철거</u> 10. <u>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</u> <p>② <u>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및 특정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8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<u>문화예술진흥법</u>」 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<u>건축물 미술작품</u> 2. <u>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</u> 3. <u>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</u> <p><삭 제>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③ <u>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미술작품의 가격</u> 2. <u>미술작품의 예술성</u> 3. <u>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</u> 4. <u>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</u> 5. <u>미술작품의 안전성</u> 6. <u>유지관리의 적정성</u> 7. <u>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</u>
<p>제19조(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)</p> <p>③ <u>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(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)전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9조(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)</p> <p>③ <u>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21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<u>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</u></p>	<p>제21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-----<u>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.</p> <p>1. <u>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</p> <p>2. <u>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</u></p> <p>3. <u>그 밖에 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등</u></p> <p>4. <신 설></p> <p>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<u>1년으로 하되,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1. <u>미술·기획·건축·조경·유지관리 등의 전문가</u></p> <p>2. <u>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</u></p> <p>3. <u>미술·건축·디자인·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</p> <p>4. <u>미술작품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</u></p> <p>④ -----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<u>제22조(규정의 준용)</u></p> <p>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<u>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<u>제22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)</u></p> <p>그 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<u>운영에 관한 사항</u>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u>다만, 제15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,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